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⁹⁰

제출연월일 : 2007. 1.12.

제 출 자: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제3항).

나.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관직을 지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6. 12. 1 ~ 12. 21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조중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으로 한다.
- 제2조중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전광역시"로, 천정되어 영 농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천정된 농업인"으로 한다.
- 제3조 각 호외의 부분중 "기금"을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및 제12조중 "심의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 2. 경제과학국장
- 3. (사)한국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임원
- 4. 기금운용 또는 농업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7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중 농정과장"을 농업유통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중 시장"을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경제과학국장
- 2. 분임기금운용관 : 농업유통과장
- 3.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

제15조중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로 한다.

제2조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 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 ③(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효율적으로 추진하 시후계농업경영인육	경영인 육성사업을 기 위하여 <u>대전광역</u> ·성기금(이하 '기금'' 등에 관하여 필요	제·조(목적)		 - <u>대전광역시</u>
거주하는 사람 중 는 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라 한다)에 5업·농촌기본법 제12 칙 제2조의 규정에 의 으로 선정되어 영농을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선정된
제3조(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시</u> 의 출연금 2.~ 3. (생략)	<u>기금</u> 은 다음 각호의	제3조(기금의 3 업경영인육성2 다) 1. 대전광역시 2. ~ 3. (현행	기금(이하 	끼금"이라 한
대전광역시후계농	회) 기금의 조성, 관리, 을 심의하기 위하여 업경영인육성기금운 의회"라 한다)를 둔	규정에 따라	기본법」 대전광역시 용심의위원	제13조제1항의] 후계농업경영 [회(이하 심의
제6조(기능) 심의회는 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2. 기금결산에 관한 3. 기타 기금운용에	한 사항 사항	(삭 제)		

햀 개 정 안 쳙 제7조(구성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 제7조(구성 등) ①심의위원회 -----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인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경제과학국장 2. 시 경제과학국장 3. (사)한국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3. (사)한국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임원 임원 4.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4. 기금운용 또는 농업관련 분야에 전 5. 농업 · 농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 제8조(위원장) 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제9조(회의)** ①----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②심의위원회----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심의위원회-----제10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농업유통과장----

두며 간사는 농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 1 1 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 에 정하는 사업 및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없다. 1.~ 4. (생략)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② (생략)	 I.~ 4.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의 지원 결정)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u>심의회</u> 의 심의를 거쳐 <u>시장</u> 이 결정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출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경제과학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제15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제·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수 있다.
 -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 의하는 사항
 -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년 2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 사 경 과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장
- 2. 회 부 일 자: 2007년 1월 12일
- 3. 상 정 일 자 :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7. 2. 1)상정, 심사, 원안가결

Ⅱ·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경제과학국장 이진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제3항).
- 나.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관직을 지정함(안 제14조).

Ⅲ·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예순)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앞의 내용과 같음.

2.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06. 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과, 2006. 11. 10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에서 인용한 용어 및 법조문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내지 제12조, 제 15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용어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함.
- 안 제5조에서는 법제처의 표준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낫표 등을 정비 함.
- 안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대전광역시 후계농업 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호선, 위원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규정에 의한 회계관직을 지정함.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2006. 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2006. 11. 10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에서 인용한 용어 및 법조문 등 관계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서,
- 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규정 정비와 관계법에 따라 회계관직을 지정하는 등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Ⅳ· 질 의 요 지: 생 략

V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